자산보관 •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02-2004-8963/0991

1.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자펀드:JP모간단기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(채권)
모펀드:JP모간단기하이일드증권모투자신탁(채권)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
증권[채권형] 집합투자기구 / 종류형 (A, C, C-F, C-W, C-E, C-S, C-I) / 모자형

다. 보관 •관리기간: 2012.03.12 – 2013.03.11

라. 집합투자업자: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현대증권, 한화투자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증권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하나대투증권, 아이비케이투자증권, KTB투자증권, 우리은행, 하나은행 대구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외환은행, 한국씨티은행, 부산은행, 신한은행, 아이엔지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 삼성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3.12	제 39 조 (보수) ③ C-E 클래스 판매회사 보수인하	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8.00	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7.00
2012.04.27	제41조 (환매수수료)		2012년 7월 27일 이전과 이후의 환매청구시 환매수수료 변경
2012.10.19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제3항제3호 (C-F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)	전문투자자는 제외), 100억원 이상 개인, 500억 이상 일반법인	전문투자자는 제외), 최초 납입금액100억원 이상 일반법인
2012.10.19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제3항제4호 (C-I 클래스 추가)	<신설>	C - I 클래스 수익증권: 최초 납입금액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
2012.10.19	제 39 조(보수) 제 3 항제 4 호 (C-I 클래스 추가)	<신설>	C - I 클래스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5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3.00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4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: 연 1000분의 0.25
2012.10.19	제 40 조(판매수수료) 제 2 항제 4 호(C-I 클래스 추가)	<신설>	해당사항 없음

* 자세한 변경사항은 http://dart.fss.or.kr 을 통해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회계감사인의 선임 •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안진회계법인	1 년	198 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□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
□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함

□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공정함
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
□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없음

□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□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